

## 개정된 EU기능조약(TFEU) 제191조 제1항 상 유럽환경정책의 기본 목적들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I. 머리말

유럽은 2001년 니스조약(Treaty of Nice)에 의해 환경법이 강화되어, 현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통해 이사회(Council)와 함께 환경관련 입법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13일 채택되어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을 보면 EU가 환경을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91조는 제1항에서 유럽환경정책의 목적에 관하여, 제2항에서는 유럽환경정책의 원칙들에 관하여, 제

3항에서는 환경관련 기타 고려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유럽의 환경정책의 목적들을 다루고 있는 TFEU 제191조 제1항에서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처음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 개선과 보호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EU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EU환경정책의 목적들을 조약상 정립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TFEU 제191조 제1항을 분석 및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EU환경정책의 목적들로 환경의 질의 보존·보호·향상, 인간건강의 보호,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용, 지역적·지구적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조치촉구를 통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sup>1)</sup> 다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2007년 발효된 EU의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규칙(Regulation 1907/2006, OJ 2006 L396/1)에 의하면 EU에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자·수입자’ 모두는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그 위해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지게 되는데, 이는 화학물질과 동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과 완제품을 수출하는 역외 국가들에게도 통상무역상 부담이 되게 된다. EU는 최근 들어 환경·건강의 보호에 있어서 국제적 입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REACH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REACH규칙의 역외적용은 선진 공업국들이 자국의 환경보호기준 강화 후에 국제통상무역의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선진국들의 환경보호기준의 강화는 개도국들의 선진국시장진출 자체를 원천적

## II. 환경의 질의 보존, 보호 및 향상

### 1. 환경 및 보존·보호·향상의 의미

#### 1) 환경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용어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TFEU 제191조 제1항에 기술되어 있는 ‘환경의 질의 보존과 보호 및 향상(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첫 번째 목적은 다분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 조문은 ‘환경’이란 용어에 사전적 의미 그 이상은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 환경정책이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함으로 인해 유럽 환경정책 목적의 범위를 동 조문 내에서 명

확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sup>2)</sup>

#### 2) 보존·보호·향상

‘보존·보호·향상’이라는 부분 역시 개념이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표현된 문구이다. 이는 아마도 “치유력이 있으며 예방할 수 있으며 규제적이고 보존적인 능동적 성질의 환경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어떠한 조치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의 질의 보존·보호·향상’이라는 표현 자체는 ‘세면용수질관리’에 관한 지침 2006/7,<sup>3)</sup> ‘공동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접근을 위한 대중의 참여를 위한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에의 공동참여권, 공동체로의 환경문제 사법청구권에 관한 아르후스 협약<sup>4)</sup>(Århus Convention) 규정



으로 제한시킬 수 있음)을 받을 수 있으나, EU는 역내 환경관련 기준과 국제통상규범(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 간의 충돌문제(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94년 GATT 제3조와 TBT협정 제2조 제1항 등)를 REACH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인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근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는 화학물질관리체계의 미비에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1994년 GATT 제20조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환경을 위한 조치”를 예외적 허용규정, TBT협정 제2조 제2항의 “국가 안보, 인간의 안전과 건강,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의 기술규제 허용규정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는 EU입법정책의 중요한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지현, “EU의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REACH규정의 환경장벽여부논의”,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2007.12), p.132,136,141 참조; EU의 환경관련 규칙과 지침은 국제교역상 기업에 대한 환경장벽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들은 환경정책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여러 국가들의 국내환경법으로 도입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EU의 REACH도 중국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China REACH 2010)의 제정 또는 일본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배정생, “EU법상 환경보호: 리스본조약 이후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2010.8), p.331 참조; 대한민국 환경부 REACH 도움센터(<http://www.reach.me.go.kr>) 참조.

2) Jan H. Jans and Hans H.B. Vedder, *European Environmental Law*(Europa Law Publishing, 2008), p.26.

3) OJ 2006 L264/13.

4) Århus Convention은 1991년의 제1차 범유럽환경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1998년 6월 23~25일 덴마크 Århus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상세한 내용은 소병천, “최근의 국제법입법소개: Århus협약”,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3호(2002.12), pp.243~257 참조.

의 적용'에 관한 규칙 1367/2006<sup>5)</sup> 전문에도 찾아볼 수 있다.

### 2. 자연 경관의 가치보호가 유럽환경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서식지 지침(Habitats Directive) 92/43<sup>6)</sup> 전문을 보면 “야생 동식물의 자연서식지의 보존을 포함한 환경의 질적 보호와 발전”이 EU가 추구하는 일반적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대우에 관하여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물원 지침(Zoo Directive) 1999/22<sup>7)</sup>는 TFEU 제191조의 적용에 있어서 비록 ‘동물의 복지’가 EU법의 일반원칙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물의 복지’도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TFEU 제191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문제는 TFEU 제38조 이하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관한 규정이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동물복지와 관련이 있는 특정 부분들은 2차 입법의 채택을 통해 통합될 수도 있는데, 그 예로 살충제 지침(Pesticide direc-

tive) 91/414 제4조(1)(b)(iii)는 해당 제품은 ‘식물의 보호’를 위해 ‘퇴치하려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sup> 물론 이러한 사항은 환경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3. TFEU 제192조에 따른 2차 입법에 의한 형벌의 회원국내 적용 여부

#### 1) Commission v. Council 사례

Case C-176/03 *Commission v. Council*<sup>9)</sup>은 매우 정치적인 이슈를 다룬 판례로서, 구 EC조약 175조(TFEU 제192조)와 관련된 사항을 국내 형법으로 적용해도 가능한지의 여부 및 이것을 국내 형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이사회는 제6차 환경행동계획(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에 따라 EU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제29조, 제31(e)조, 제34(2)(b)조에 근거하여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이사회 기본결정(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3/80<sup>10)</sup>을 채택하였다. 이 이사회 기본결정의 본질은 ‘수 개



5) OJ 2006 L64/37.

6) OJ 1992 L206/7.

7) OJ 1999 L94/24.

8) Case T-229/04, *Sweden v. Commission*, [2007] ECR II-2437.

9) Case C-176/03, *Commission v. Council*, [2005] ECR I-7879.

10) OJ 2003 L29/55.

의 환경범죄'를 정하여 회원국들이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러한 기본결정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채택된 법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법원은 EU에게 부여된 권한에는 회원국에 대해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ECJ는 이러한 사항이 효과적이며 적절한 형벌의 방식으로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환경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면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치는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본결정의 주된 입법 취지가 '구체적인 형벌 적용'이 아니라 '환경 보호'에 있었다면 해당 기본결정은 TFEU 제192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채택될 수 있었을 것이다.<sup>11)</sup>

## 2) Commission v. Council 사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Case C-440/05, *Commission v. Council*<sup>12)</sup>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박오염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형사적 사안'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5/667<sup>13)</sup>의 취소를 요

구하였다. 이에 유럽사법법원은 EU에게는 어떠한 '종류(type)'와 '수준(level)'의 형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다. 따라서 EU는 2차 입법을 통해 TFEU 제192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에게 '환경범죄'에 대한 형벌의 부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형벌의 '수준'과 '종류'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강제되기 위해서는 조약(당시의 Reform Treaty)상 형사 처벌의 '종류'와 '수준'에 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약상 형벌의 종류와 수준을 명시하지 않는 한 EU는 '사법내무협력'에 해당되는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2차 입법행위는 할 수 없다.

### III. 인간 건강의 보호

#### 1. 인간 건강의 보호와 공중보건의 관계

##### 1) 구별의 실익

EU 환경정책의 두 번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건강의 보호(protecting human health)'가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범주보다 더 광의의 개념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이란 하나의 집단에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공중의 건강



11) Jans and Vedder, *supra* note 2, p.28 참조.

12) C-440/05, *Commission v. Council*, [2007] ECR I-9097.

13) OJ 2005 L255/164.

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비해, ‘인간 건강의 보호’는 반드시 하나의 집단에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건강상 이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개 ‘개인’의 건강상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상의 ‘인간 건강의 보호’는 ‘공중보건’보다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TFEU 제191조 제1항에 따라 EU 내에서 단체 또는 사인의 건강에 관한 권익을 적절히 조화시키지 못할 경우 EU는 명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2) 구별의 불명확성

그런데 두 개념에 관해서, 식물보호상품의 수입제한(국내 식물을 보호하는 데 해가 되는 상품의 수입금지)과 관련해 TFEU 제36조를 적용한 *Fumicot* 사건<sup>15)</sup>에서는 다소 개념 정의의 구분이 불분명한데, 유럽사법법원은 두 개념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TFEU 제36조가 사실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공중보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사법법원은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국내규제(식물보호상품의 수입제한)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TFEU 제36조에 규정된 예외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 이후에는 앞에서 기술된 두 개념의 구별이 많이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다.

### 2. 보호 대상에 동·식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EU 환경정책의 두 번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두 번째 목적에서는 단지 ‘인간’ 건강의 보호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동식물군’의 보호가 이 보호개념에 포함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TFEU 제191조 제1항 첫 번째 목적(환경의 질의 보존·보호·개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살펴본 바가 있다. 따라서 EU 환경정책의 두 번째 목적이 단지 인간 건강의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본다.<sup>16)</sup>

다만 EU 환경정책의 두 번째 목적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zation: GMO)의 환경에의 고의적인 유포금지’에 관한 지침 2001/18<sup>17)</sup> 제1조에서는 동 지침의 목적을 ‘인간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 세면용수’에 관한 지침 2006/7<sup>18)</sup> 제1조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의미가 있다.



14) Jans and Vedder, *supra* note 2, p.29.

15) Case 272/80, *Frans-Nederlandse Maatschappij voor biologische Producten*, [1981] ECR 3277.

16) Jans and Vedder, *supra* note 2, p.30 참조.

17) OJ 2001 L106/1.

18) OJ 2006 L64/37.

## IV.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 1. '천연자원'의 개념

TFEU 제191조 제1항에서는 천연자원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하지가 않다. 1972년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sup>19)</sup>의 제2원칙에 의하면 지구의 천연자원은 공기, 물, 땅, 식물군, 동물군 그리고 특히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표본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무, 광물, 석유, 가스, 화학 물질 등도 천연자원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스톡홀름선언상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념정의에 근거할 경우, TFEU 제191조 제1항의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EU 환경정책의 세 번째 목적은 광범위한 규율대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그 밖에 천연자원의 보호 대상은 '질산비료'에 관한 지침 91/676,<sup>21)</sup> 공동체 '에너지효율 부차 프로그램'을 위한 규칙 2422/2001,<sup>22)</sup> '신차 마케팅에 있어서 CO<sup>2</sup> 배출량을 표시해야 할 의

무'를 규정해 놓은 지침 1999/94<sup>23)</sup> 그리고 물 관리 기본지침('해수면'은 지침 2000/60,<sup>24)</sup> '심해 부분'은 지침 2006/7<sup>25)</sup>)에서 각각 언급되어 있다.

### 2.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개념

국제법적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정책 및 개발정책에 따라 천연자원을 활용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들은 부적절한 생산 및 소비의 패턴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한편 EU의 제 6차 환경행동계획(Six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Decision 1600/2002 laying down the Sixth Community Environment Action Programme)<sup>26)</sup>에서는 '천연자원의 신중한 이용'이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아, 천연자원의 신중한 이용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건 중 하나임을 인정한 바 있다.



19) 1972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20) 천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자연보존, 토양보존, 쓰레기처리(재활용의 촉구), 도시지역의 정책을 포함한 연안 및 산악의 재해 재난 대비, 수질(물)관리, 자연친화적 농경정책, 에너지 보존 등이 언급된 바도 있다. Jans and Vedder, *supra* note 2, p.31 참조.

21) OJ 1991 L375/1.

22) OJ 2001 L332/1.

23) OJ 1999 L12/16.

24) OJ 2000 L327/1.

25) OJ 2006 L64/37.

26) OJ 2002 L242/1; 리스본조약에 의해 개정된 TEU 제21조(f) 참조.

## V. 지역적·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기여

### 1. 환경문제의 초국경적 성질

유럽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은 EU 자체의 ‘역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EU ‘역외 환경보호’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sup>27)</sup> 이는 EU가 환경보호는 EU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EU의 제 6차 환경행동계획은 전 세계적인 환경보존을 위한 EU의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sup>28)</sup>

게다가 EU는 자신의 역내 2차 입법 활동 외에도 다각적인 논의를 하였는데, 그 예로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1989년 유해물질(쓰레기) 국경이동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 1992년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그 부속 프로토콜 그리고 1992년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있으며, 이는 EU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이 전 세계 및 지역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로서는 TFEU 제191조 제1항의 EU 환경정책의 네 번째 목적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르면 만약 EU조약 자체로 특별 규정이나 예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역적 또는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 모임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Kramer 사례와 Drift-Net 사례

다만 *Kramer* 사건과 *Drift-Net* 사건<sup>29)</sup>에서는



27)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은 이사회 규칙 1210/90/EEC에 의해 설립되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면 한계가 있으나, EU 비회원국인 EFTA까지 참여하는 개방된 조직이다. 이는 환경문제가 유럽에서는 이미 초국경적 성질을 갖는 국제적 문제임을 보여 준다.

28) Jans and Vedder, *supra* note 2, p.32 참조.

29) 이 *Kramer* 사건은 공해상의 어업에 관한 당시 EC의 권한에 관한 것으로, ECJ는 국제공법에 따라 회원국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공동체는 공해상의 어업에 대해서도 실제적 관할이 있다고 보아 EC의 입법자들은 공해 생태자원의 보존을 위해 법안을 마련할 내부적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은 *Drift-Net* 사건에서 더욱 확고해졌는데, 이 사건에서는 EC가 공해상의 어류보존에 대한 권한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ECJ는 *Kramer* 사건과 같은 이유를 들며 공동체가 공해상의 어류보존을 위해 2.5km 이상의 유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Joined Cases 3, 4 and 6/76, Kramer*, [1976] ECR 1279; *Case C-405/92, Etablissements Armand Mondiet v. Société Armement Islais*, [1993] ECR I-6133.

제191조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EU 영역 밖에 대한 초지역적인 환경정책은 그것이 분명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지라도 반드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규정을 포함한 국제법과 조화된 상태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환경에 대한 초지역적 환경정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EU는 국제법적 제한규정에 합치되게 법이 발효되거나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TFEU 제191조의 어떠한 해석도 국제법상의 의무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sup>30)</sup>

## VI. 맺음말

이처럼 EU환경법의 발전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 경제팽창과 ‘동시에’ 점차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출발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EU는 단순한 ‘양적’ 경제성장이 아닌 ‘질적’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EU는 이러한 기초 아래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이후 EU환경정책의 목적들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EU환경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법이라고 하면 흔히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온 배출권거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환경적 인식’과 일상생활에서의 ‘친환경적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 다룬 EU환경정책의 ‘목적들’은 환경행정에 있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져다줄 것으로 본다.<sup>31)</sup>

끝으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 또는 이상기후는 지구 전체에 물리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여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하여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EU환경정책의 목적에서 깊이 있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환경의 질을 보존·보호·향상시켜야 하며, 인간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자원을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환경문제가 초국경적인 사안임을 인식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오늘날 EU는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법·제도적으로 국제적인 행위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EU가 전 지구적 환경개선과 EU 자



30) Jans and Vedder, *supra* note 2, p.35 참조.

31) 유럽에서 환경법의 지위와 관련하여 EU차원의 환경입법의 회원국으로의 강제가 TFEU 제258조(구 EC조약 제 169조)에 의거해 EU위원회의 위반회원국을 상대로 한 EU사법기관으로의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장차 EU환경법의 적극적·긍정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의 이익의 극대화라는 양 측면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듯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내외 모두를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김 두 수**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